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 세대간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전 영 준**

논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조세부담을 현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회고적 회계(RGA_10_48)를 산출하고, 이를 Chun and Song(2018)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회계(RGA_49_13)와 기준연도(2013) 시점에서 각 세대의 잔여생애 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인 잔여생애회계(FGA)와 합산하여 전생애회계(FLGA)를 산출하였다. 1913년 이후 출생한 모든 세대의 FLGA를 비교한 결과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의 재정정책이 노년층과 현재세대에 비하여 청년층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더 높은 순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세대간 재분배는 향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세대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재정정책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세대간 형평성, 회고적 세대간 회계, 일제강점기, 순조세부담

JEL 주제분류: H60, H50, N0

I. 서론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시행의 중요한 환경변화로 작용하고

논문투고일: 2019. 11. 21. 심사완료일: 2020. 1. 31. 게재확정일: 2020. 2. 15.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199).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e-mail: yjchun@hanyang.ac.kr

있다.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로 이어져 재정 수지가 악화되며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기에 있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청년기와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이들의 조세부담의 규모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재정정책 변화의 특징 중의 하나로 노인층에 대한 이전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30년 동안의 복지정책 확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및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의 개편, 지속적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008년 기초연금도입 및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은 노인층의 복지급여를 늘리는 복지제도 개편의 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경제활동인구에 비하여 작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것은 그 자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구조상의 특징으로 인해 고령층 지원을 위해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위험 또한 정책 개편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될 것이다. 현행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증가를 유발할 것이며,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년층의 건강보험급여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청년층에 편중되어 나타나며,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급여 혜택도 노년층에 집중된다. 최근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기초연금금액의 상향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고 공적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이 지연되고 있으며, 노인층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의 확충이 논의되고 있어 노년층과 청년층 그리고 미래세대간 순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순조세부담(=조세부담-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세대간 순조세부담을 비교함에 있어 특정시점의 연령별 순조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연령별 평균 조세부담과 이전수입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애전체의 순조세부담을 세대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 순조세부담의 비교를 위해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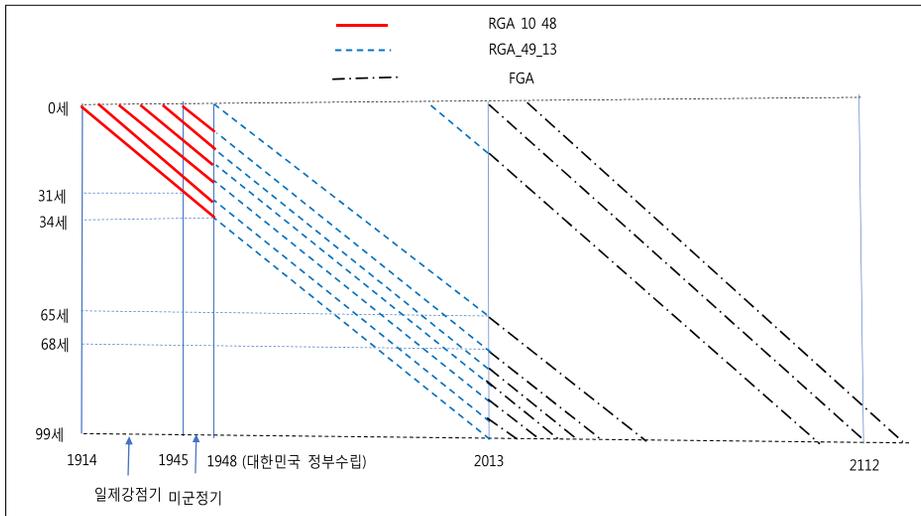
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세대간 회계는 생애기간동안 부담하는 순조세부담을 특정시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세대간 회계가 모든 세대에 걸쳐 전 생애 걸친 순조세부담을 추계하는 방법이면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세대간 회계 추계 연구의 대부분은 전 생애 기간에 걸친 순조세부담보다는 잔여생애동안 즉 현시점부터 사망 시기까지 잔여생애동안의 순조세부담을 기준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잔여생애 회계(Forward-looking GA, FGA) 추계 연구가 대부분이다. FGA에는 기준 시점에 생존하는 세대가 과거에 부담한 순조세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세대간 순조세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과거에 부담한 순조세부담을 기준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회고적 회계(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RGA)를 추계하고 이를 FGA와 합산함으로써 전 생애 세대간 회계(Full-Lifetime Generational Accounts, FLGA)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비교하고 재정정책 측면에서의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GA를 산출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료의 제약이다. 각 세대가 과거에 부담한 순조세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 연도별 연령별 조세 및 복지제도 항목별 평균수준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 조세부담과 복지급여에 대한 자료는 항목별 총액 정도이며 각 항목의 연도별 연령별 평균수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도별 연령별 복지 및 조세 항목별 평균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축적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자료의 생성이 개시된 시기가 최근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과거의 성별 연령별 평균수준 추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매우 제한적인 가정에 입각한 RGA 추계가 시도되어 왔다. 제한적인 가정이라 함은 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기까지 성별 연령별 평균수준을 추정하고,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평균수준이 특정 연도의 프로파일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한국의 RGA를 추계한 시도로 Chun and Song(2018)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 기준연도(2013)까지의 기

간 동안의 RGA를 산출하고 이를 FGA와 합산하여 (부분적인) 전생애회계 (FLGA) 를 추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hun and Song (2018)에서 빠져 있는 일제강점기와 해방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사이의 기간 동안의 순조세부담, 즉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RGA를 추계하여 한국의 FLGA를 완성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의 미군정기간의 순조세부담을 기준연도 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대상으로 회고적 회계 (RGA_10_48, 이하 “일제강점기 회고적 회계”로 지칭)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Chun and Song (2018)의 회계들과 합산하여 전생애회계 (FLGA I)를 추계하였다(〈그림 1〉 참조). 이 연구는 한국의 재정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세대의 FLGA를 추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시대별 세대간 회계(기준연도: 2013년)



본 연구에서 추계된 일제강점기 회고적 회계 (RGA_10_48)와 이 회계와 Chun and Song (2018)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회계 (RGA_49_13), 그리고 기준연도(2013) 시점에서 각 세대의 잔여생애 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인 잔여생애회계 (FGA)를 합산으로 이루어진 전생애회계

(FLGA)의 산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13년 이후 출생한 모든 세대의 FLGA를 비교한 결과 일제강점기와 한국의 재정정책이 노년층과 현재세대에 비하여 청장년층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더 높은 순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세대간 재분배는 향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세대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재정정책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세대간 회계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요약한다. 제Ⅲ장에서는 세대간 회계의 개념에 대해,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복지지출과 조세구조와 동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간 회계 산출과정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제Ⅵ장에서는 회계 추계결과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순조세부담이 세대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Auerbach et al. (1991)가 제안한 세대간 회계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정책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생애주기모형에서 재정정책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 점에서도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

세대간 회계는 각국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정책이 세대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1) 생애주기모형의 틀에 세대간 회계를 통합한 예로 Fehr and Kotlikoff(1999)와 Chun (2007)이 있다. 전자는 세대간 회계를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일반균형모형에 통합하였으며, Chun(2007)은 고령화가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대간 회계가 민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즉 소비의 생애 순조세부담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대간 회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에 대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Auerbach, A., L. Kotlikoff, and W. Leibfritz (eds.), 1999)와 *Generational Accounting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1999; Raffelhuschen, 1999)은 세대간 회계의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는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의 유지가능성을 세대간 회계라는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각국의 재정정책을 평가하였다. 특히 유럽 각국의 세대간 회계를 비교한 후자의 연구는 유럽연합 출범과 관련하여 각국의 재정건전성 의무규정 제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유럽각국의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비교한 연구이다.

세대간 회계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2000년을 기준 연도로 그 당시 한국의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을 평가한 Auerbach and Chun (2006)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한 전영준 (2003, 2004) 등이 있다. 세대간 회계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외에도 남북한 통일비용 (Auerbach et al., 2005), 이민이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Auerbach and Oreoploulos, 2000),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공적자금 투입이 미래세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전영준·이기영, 2003), 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 분석 (전영준·안종범, 2007)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잔여생애회계 (FGA) 산출 방식에 입각하여 세대간 회계를 산출하였다. 회고적 세대간 회계 (RGA)를 산출하기 위한 시도는 Gokhale et al. (1999)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이다. 미국의 재정정책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와 관련된 형평성을 평가함에 있어 전 생애에 걸친 순조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RGA와 FGA를 통합한 전 생애 세대간 회계 (FLGA)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헝가리 공적연금분석에도 이용되었다 (Gal et al., 2001). 기준연도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현재세대가 헝가리의 공적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에서 공적연금급여 수급액을 차감한 순조세부담의 가치를 기준연도 (2000)의 가치로 환산하였다. Gokhale et al. (1999)에 의해 시작된 RGA의 산출에 대한 시도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된 총량변수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항목별, 즉 각종 조세와 이전지출의

연령별 분포에 대한 상세한 연도별 자료가 필요한 관계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Gokhale et al. (1999)의 경우도 총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용하였으나, 각종 조세와 이전지출의 연도별 연령별 분포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특정 연도의 연령별 분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l et al. (2001)은 헝가리의 재정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나 분석 대상을 공적연금으로 좁히되 공적연금급여와 보험료의 연도별 연령별 분포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이용하여 RGA와 더불어 FLGA를 산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Bommier et al. (2010)은 미국의 1985년 출생세대부터 2090 출생세대를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부터 얻은 순편익을 계산하고 산출된 순편익에 대한 세대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조세와 이전수입의 연도별 연령별 분포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요 분석대상은 미국의 공적연금(Social Security)과 건강보험(Medicare), 그리고 교육지출과 조세부담에 국한하였다. RGA와 FLGA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최기홍(2013)이 있다. 이 연구는 1988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대상으로 FLGA를 산출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세대간 형평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의 재정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RGA와 FGA를 통합한 FLGA를 산출한 최초의 국내 연구는 Chun and Song(2018)이다. 이 연구는 재정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전 생애 통합 회계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는 Gokhale et al. (1999)과 유사한 시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 연도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재정정책이므로 일부 노년세대의 생애 중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에 납부한 순조세부담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조세와 이전수입의 연도별 연령별 분포에 대한 보다 상세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Gokhale et al. (1999)에 비하여 진일보한 면이 있다. 또한 Gal et al. (2001)과 최기홍(2013)과 비교해서는 분석대상을 연금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재정정책으로 분석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진일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hun and Song(2018)이 포함하지 않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복지급여 수급과 조세부담을 포함하여 RGA를 산출함으로써 한국의 FLGA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Ⅲ. 세대간 회계의 개념

세대간 회계는 각 세대의 생애기간동안의 순조세(=조세-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대간 회계와 관련해서 잔여생애 회계 산출 방식(forward-looking approach, FGA, ‘전방주시적 접근법’으로도 지칭됨), 회고적 회계 산출방식(retrospective approach, RGA)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FGA는 잔여생애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FGA의 추계는 정부의 예산제약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예산제약 식 (1)은 현재와 미래의 재화와 용역의 구입(정부소비)의 재원은 현재와 미래의 납세자의 순조세 혹은 현시점의 정부 순자산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um_{s=0}^D N_{t,t-s} P_{t,t-s} + \sum_{s=1}^{\infty} N_{t,t+s} P_{t,t+s} + W_t = \sum_{s=t}^{\infty} G_s \prod_{j=t+1}^s \frac{1}{1+r_j} \quad (1)$$

$N_{t,k}$ 는 k 년도에 태어난 세대의 평균적인 개인이 정부에 대해 잔여생애 동안 부담하는 액수를 t 년도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다(식 (2)). $P_{s,k}$ 는 k 년도에 출생자 중 s 년까지 생존한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위 식의 좌변 첫째 항은 현재 생존하는 세대의 FGA의 총 가치를 의미한다. 최대 생존 기간을 D 년으로 가정하고,²⁾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기준시점에서 0세($k=t$)부터 D 세($k=t-D$))의 FGA를 합한 것이다. 좌변 두 번째 항은 기준 연도 이후에 출생하는 미래세대들의 FGA의 합을 나타내고 있다. 좌변 세 번째 항(W_t)은 정부 보

2) 최대 생존 기간 D 는 99세로 가정하여 100세에는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의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명의 연장을 최대생존 가능 연령의 상승으로 반영하지 않고 연도별 사망률 하락으로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의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가정을 이용하였다.

유 순자산(net wealth)을 나타낸다. 우변은 현재와 미래의 정부소비(G)의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 이 정부 예산제약식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구매의 재원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과 정부 순자산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전지출과 정부소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급여, 건강보험급여 등 복지급여 등과 같이 혜택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전지출로 분류한다. 그리고 SOC 투자, 일반행정, 국방, 외교와 같이 혜택의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정부소비로 분류한다. $N_{t,k}$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_{t,k} = \sum_{s=\max(t,k)}^{k+D} T_{s,k} \prod_{j=t+1}^s \frac{1}{1+r_j} \quad (2)$$

$T_{s,k}$ 는 k 년도에 개인들이 s 년도에 정부에 지불할 평균 순조세부담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세대간 회계는 $N_{t,k}$ 의 집합을 의미한다.

FGA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계된다. 먼저 식 (1)의 첫 번째 항, 즉 기준연도에 생존하는 현재 세대들의 회계를 현행의 재정정책을 전제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현재와 미래의 정부소비의 현재가치(식 (1)의 우변)를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기준연도 현재 정부순자산 자료와 기 추계한 현재세대의 회계를 이용하여 미래세대의 회계를 계산한다. 따라서 현재세대의 회계는 현행의 재정정책이 전제된 반면 미래세대의 회계는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순조세부담을 의미한다. 미래세대의 회계를 기준연도 출생세대의 회계와 비교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가능성을 평가한다. 미래세대와 기준연도 출생세대의 FGA는 모두 전생애 걸친 순조세부담이므로 모두 FLGA에 해당되므로 양 회계의 비교는 세대간 형평성 평가에 유효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미래세대의 FGA(FLGA)가 기준연도 출생세대보다 클 경우, 현행의 재정정책이 유지가능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만족시키려면 미래 어느 시점에 순조세부담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RGA(N_{t,k}^R)$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N_{t,k}^R = \sum_{s=k}^{t-1} T_{s,k} \prod_{j=s}^t (1+r_j) \quad (3)$$

RGA는 과거의 순조세부담을 복리로 기준연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RGA(N_{t,k}^R)$ 추계를 위해 각 세대의 과거 조세부담과 이전수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도별·성별·세대별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 수급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 수입에 대한 정보를 해당 '통계연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세의 경우 연도별 조세수입 자료는 있으나, 그 상세 분포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특정연도의 분포를 추정하여 이 분포를 모든 연도에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조세와 이전수입 연도별 총액을 성별·세대별 분포에 따라 배분하고 각 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기준연도 시점의 가치로 산출한다.

IV.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복지지출과 재정 및 조세 구조

일제강점기 정부의 범위를 현대적인 의미의 공공부문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분석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김낙년 편(2012)의 정부 세입 및 세출 추계시 적용한 정부의 범위(〈표 1〉)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재정 상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의 중앙정부 재정은 조선총독부 정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으로 구성된다. 공기업들은 공공재 보다는 민간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하는 국영기업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지방정부 재정은 도, 부, 읍면, 학교비, 학교조합을 단위로 운영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와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표 1〉 일제강점기 정부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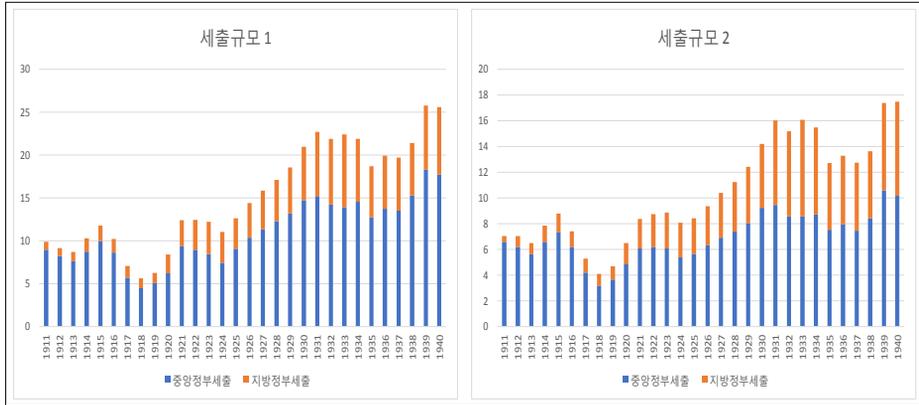
구분	정부 서비스 생산자	공기업	
		부속기업	공기업
중앙재정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평양광업소, 인쇄소, 驛屯土	전매, 철도, 체신
	기타 특별회계	-	조선간이생명보험 조선삼림, 조선의원, 및 제생원
지방정부	-	-	-
일본정부	군사비 이입	-	-

자료: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정부세출 규모는 식민지 초기보다 말기로 갈수록 GDP 대비 세출규모 비율이 증가하였다. 세출에 공기업 회계를 포함할 경우 총세출 규모가 최대 GDP의 25%에 도달하였으며, 공기업 회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GDP의 18%에 근접하였다(〈그림 2〉). 중앙 및 지방정부 세출을 비교하면 지방정부 세출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지방정부 비중이 40% 정도(세출규모 2 기준)에 수렴하였다.

중앙정부 세출구성은 경제사업비(=연료에너지+농수산물수렵+광업제조업 건설업+운송 및 통신+기타 경제사업) 비중이 가장 높아서 최고 70%에 도달하였다(〈그림 3〉). 경제사업비가 높은 이유는 공기업 회계를 포함하여 공기업의 세출을 경제사업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사업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세출은 일반행정비이며, 교육비,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비중은 매우 낮았다. 이들 항목들 중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관련 지출의 비중이 높았으며,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비중이 가장 낮았다. 지방정부의 세출 중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도가 많았으며, 교육비의 비중이 높았다(〈그림 4〉). 그러나 교육비 비중은 식민지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졌다. 보건관련 지출에 해당되는 위생비의 비중은 식민지 후반기에는 약 5%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복지지출에 해당되는 사회사업 및 지방개량비 비중은 매우 낮아 1% 미만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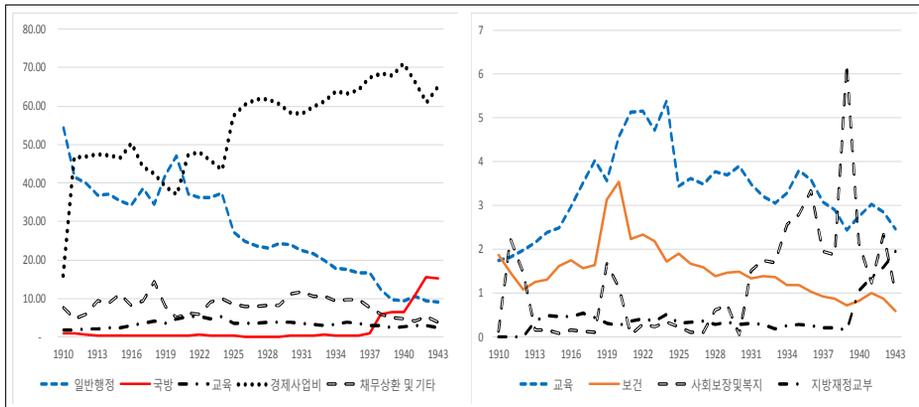
〈그림 2〉 일제 강점기 정부 세출 규모(GDP 대비 비율, %)



주: 세출규모 1: 중앙정부 세출은 총독부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공기업;
 지방정부 세출은: 도지방비, 면, 부, 학교비, 부재1부 부재 2부.
 세출규모 2: 중앙정부 세출은 세출규모 1 - 공기업
 지방정부 세출은: 도지방비, 면, 부 지출.

자료: 낙성대 경제연구소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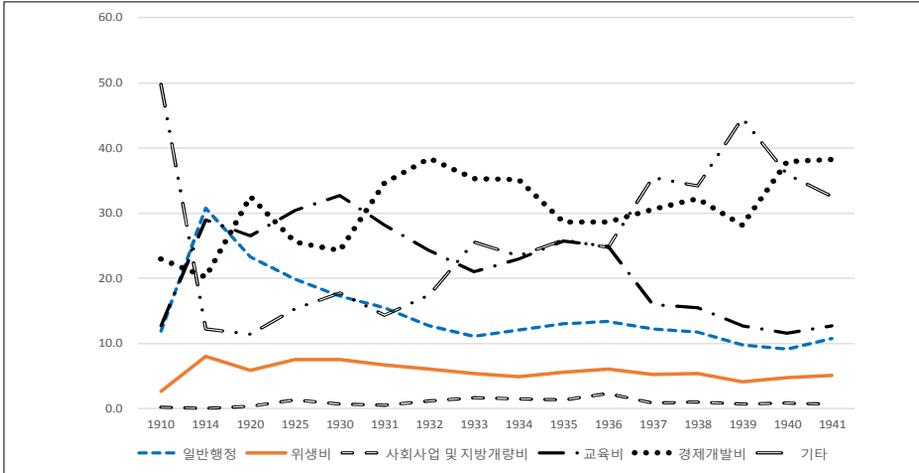
〈그림 3〉 일제 강점기 중앙정부 세출 구성 1(%)



주: 1) 공기업 회계를 포함한(〈그림 2〉의) 세출규모 1 대비 비율.

자료: 낙성대 경제연구소 통계자료.

(그림 4) 일제 강점기 지방정부 세출 구성(%)



자료: 낙성대 경제연구소 통계자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급여에 해당되는 중앙정부(총독부 특별회계)의 보건지출과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비중은 높지 않다. 이들 복지급여들은 보건과 여타 복지급여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급여도 이에 포함시켰다. 중앙정부인 총독부와 지방정부의 정기적인 복지급여 지출 이외에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국비, 지방비, 임시은사금, 은사이제구조부조금, 일본 황실로부터의 어하사금(御下賜金),³⁾ 흉년시 궁핍한 궁민(窮民)을 구제하기 위한 궁민구조금으로 구성된다(〈표 2〉). 일제강점기의 복지지출 규모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31년까지 그 규모가 당시 남북한 GDP의 1% 미만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기간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1937년 이후 기간에 그 절대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⁴⁾

3) 이들 비정기적인 복지급여 지출은 국비와 지방비보다는 임시은사금, 은사이제구조부조금, 하사금과 같은 일반예산이 아닌 임시적인 자금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안상훈 외, 2005). 이러한 이유로 비정기적인 복지지출을 총독부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된 정책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보건지출,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과 별도의 지출로 간주하였다. 양자간의 다소의 중복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4) 1937년 이후 기간 동안의 복지지출 증가 요인에 대해 안상훈 외(2005)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30년대의 세계적인 공황, 한반도내에서 식량증산을 하고자한 산미증산계획으로 인해 일본열도의 농업실업자 증가로 인한 문제로 인해 이 계획을 중단함에 따라 한

〈표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기의 복지지출(단위: 백만圓(원)¹⁾)

	보건			여타 복지			비정기적 지출 ⁶⁾	합계	
	중앙 ²⁾	지방 ³⁾	소계	중앙 ⁴⁾	지방 ⁵⁾	소계		금액	GDP 대비 비율(%) ⁷⁾
1910	0.34	0.05	0.39	0.02	0.00	0.03	0.59	1.01	-
1911	0.67	0.22	0.89	1.03	0.00	1.04	-	1.93	0.37
1912	0.56	0.39	0.94	0.76	0.01	0.77	-	1.71	0.27
1913	0.67	0.56	1.23	0.08	0.01	0.09	-	1.31	0.19
1914	0.72	0.73	1.45	0.08	0.01	0.09	-	1.54	0.24
1915	0.92	1.03	1.94	0.04	0.03	0.07	0.02	2.04	0.36
1916	1.01	1.33	2.33	0.09	0.05	0.13	0.04	2.51	0.38
1917	0.80	1.63	2.42	0.07	0.07	0.14	0.01	2.57	0.29
1918	1.06	1.92	2.98	0.07	0.09	0.16	0.01	3.15	0.22
1919	2.92	2.27	5.19	1.56	0.11	1.67	0.08	6.94	0.38
1920	4.33	2.52	6.85	1.39	0.13	1.52	0.16	8.53	0.43
1921	3.32	3.00	6.33	0.10	0.28	0.38	0.02	6.72	0.42
1922	3.61	3.48	7.10	0.43	0.44	0.86	0.13	8.09	0.47
1923	3.17	3.97	7.14	0.35	0.59	0.95	0.25	8.34	0.49
1924	2.34	4.45	6.78	0.46	0.75	1.21	0.30	8.29	0.46
1925	3.24	4.93	8.17	0.39	0.91	1.30	0.71	10.18	0.54
1926	3.18	5.23	8.41	0.20	0.85	1.05	0.07	9.54	0.52
1927	3.36	5.53	8.89	0.21	0.80	1.00	0.06	9.96	0.54
1928	3.05	5.84	8.88	1.32	0.74	2.06	0.50	11.44	0.65
1929	3.31	6.14	9.45	1.59	0.69	2.28	0.27	12.00	0.70
1930	3.09	6.45	9.54	0.09	0.63	0.73	0.28	10.54	0.74
1931	2.78	6.56	9.34	3.14	0.56	3.70	0.14	13.18	0.96
1932	2.97	7.14	10.11	3.73	1.37	5.10	0.30	15.50	1.03
1933	3.11	7.57	10.68	3.90	2.22	6.12	0.78	17.58	1.07
1934	3.20	6.82	10.02	6.92	2.02	8.94	1.57	20.53	1.11
1935	3.38	7.37	10.75	7.96	1.75	9.71	0.95	21.41	0.96
1936	3.30	8.85	12.15	10.83	3.45	14.28	2.06	28.49	1.21
1937	3.76	9.17	12.93	7.98	1.33	9.31	0.31	22.54	0.75
1938	4.39	11.11	15.50	9.34	2.10	11.44	0.66	27.60	0.84
1939	4.90	11.63	16.53	42.35	1.98	44.33	2.47	63.32	1.70
1940	6.69	17.21	23.90	17.50	3.03	20.53	0.64	45.06	0.98
1941	9.44	20.50	29.93	11.50	2.56	14.06	0.19	44.18	-
1942	10.15	-	10.15	26.90	-	26.90	10.17	47.22	-
1943	9.17	-	9.17	15.91	-	15.91	-	25.08	-
1946						415.13 ⁸⁾		415.13	
1947						792.00 ⁸⁾		792.00	
1948						945.00 ⁸⁾		945.00	

주: 1) 1원: 1000圓 비율로 세대간 회계 추계에 반영함.

(1950년 8월 28일 개편, 조선은행권 원 : 한국은행권 원 = 1:1,

1953년 2월 17일 개편, 원 : 환 = 100:1,

반도의 빈민농업가구의 증가, 그리고 한반도의 병참기지화와 인력동원 등으로 인한 사회 불만의 증가가 이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이들은 해석하고 있다.

1962년 6월 10일 개편, 환 : 원=10:1 교환을 반영함).

- 2) 총독부 특별회계 보건의출.
- 3) 위생비.
- 4) 총독부 특별회계 사회보장 및 복지.
- 5) 사회사업 및 지방 개발비.
- 6)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국비 지방비, 임시 은사금, 은사이재구조 부조금, 어하사금, 의손금.
- 7)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GDP 추계 이용(1911-1941).
- 8) 단위: 원(해방이후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 교환비율이 1원:1圓= 1:1이었음).

자료: 낙성대 경제연구소 통계자료, 안상훈 외(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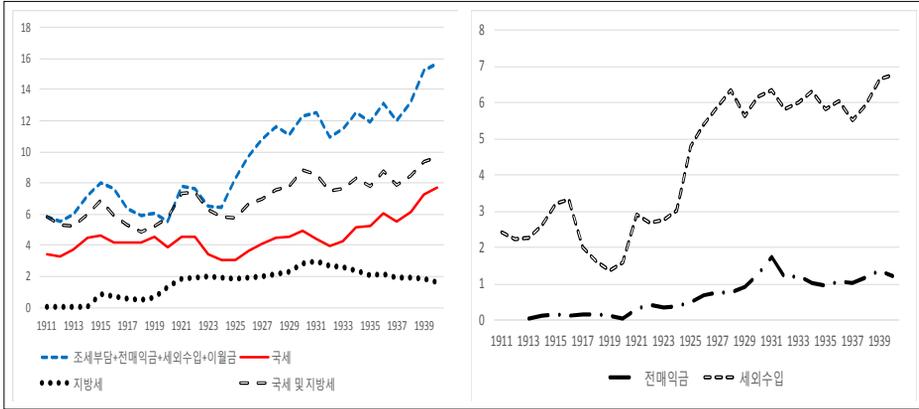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체의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식민지기 말기에 오면 GDP의 16%에 근접하였다(〈그림 5〉). 이 시기의 특징은 전매익금 및 세외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공기업의 판매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최대 GDP의 7%에 도달하였으며 전매익금도 GDP의 1%를 상회하는 연도가 많았다. 전매익금과 세외수입을 제외한 정부의 세입, 즉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은 최대 GDP의 10%에 근접하였다. 총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식민지기 말기에 대폭적으로 높아졌다.

〈그림 2〉에 보고된 세출규모와 〈그림 5〉의 세입규모를 직접비교하여 일제강점기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들 세출과 세입에는 국공채 및 차입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채무상환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기초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수지를 평가하였다. 재정수지의 변동 폭이 상당히 컸으며 특히 1930년대의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대공황기였던 1930년대 초반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되었으며, 대륙침략기였던 1930년 후반에도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 재정수지의 지표로 채무의 순증을 기준으로 재정수지를 평가하여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30년대 초반과 후반에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의 구성을 보면 자산보유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세, 자본소득세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노동소득세 수입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일제강점기 말기로 가면서 자본소득세와 자산거래세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자산보유세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소비세의 비중은 일제강점기 내내 높게 유지되었으며 그 비중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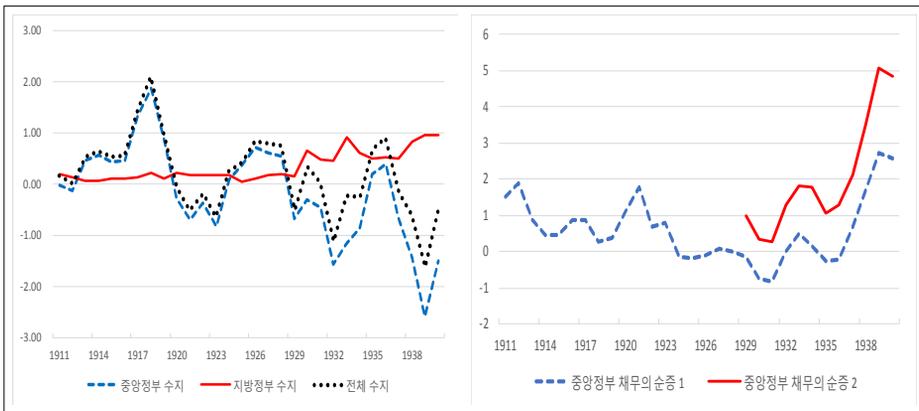
5) 조세의 분류는 〈부록 1〉의 〈표 A1-1〉의 분류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림 5〉 일제강점기 세입규모(GDP 대비 비율, %)



자료: 낙성대 경제연구소 통계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그림 6〉 일제 강점기 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주: 1) 중앙정부 수지는 기초재정수지(= 총세입 - 총세출 - (국공채 및 차입금-예탁금 및 이자 - 채무상환 및 기타)).

2) 지방정부 수지(= 총세입 - 총세출)에는 기채비, 대부금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기초 재정수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음. 그러나 지방정부 세입에 부채 상환 및 재산 수입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초재정 수지 개념으로 전환할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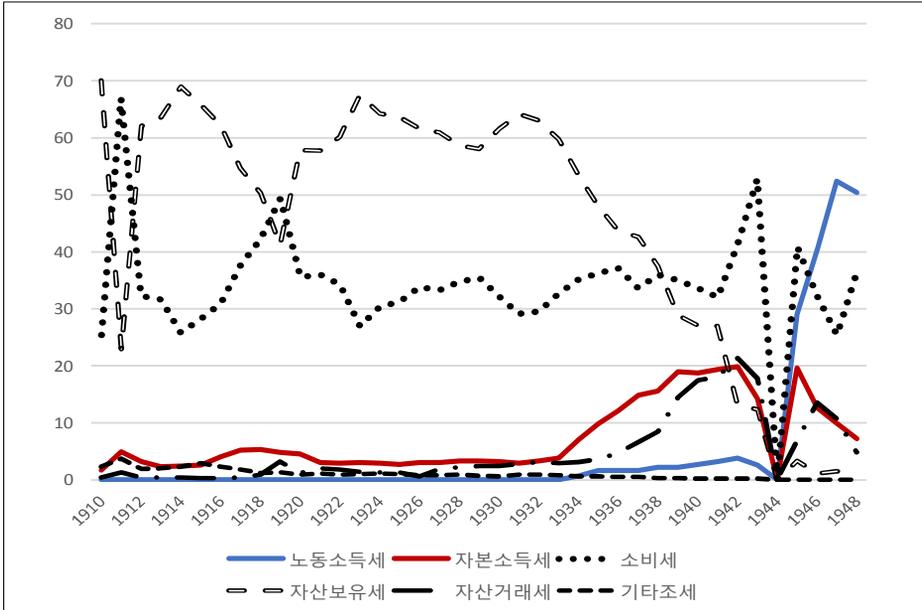
3) 전체 수지(= 중앙정부 수지 + 지방정부 수지)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이전이 중앙정부 재정에서는 세출로 지방정부 재정에서는 세입으로 계상되어 상쇄되어 있음.

4) 중앙정부 채무의 순증 1 = 국공채 및 차입금 - 채무상환 및 기타.

5) 중앙정부 채무의 순증 2 = 중앙정부 채무의 순증 + 예탁금 및 이자.

자료: 낙성대 경제연구소 통계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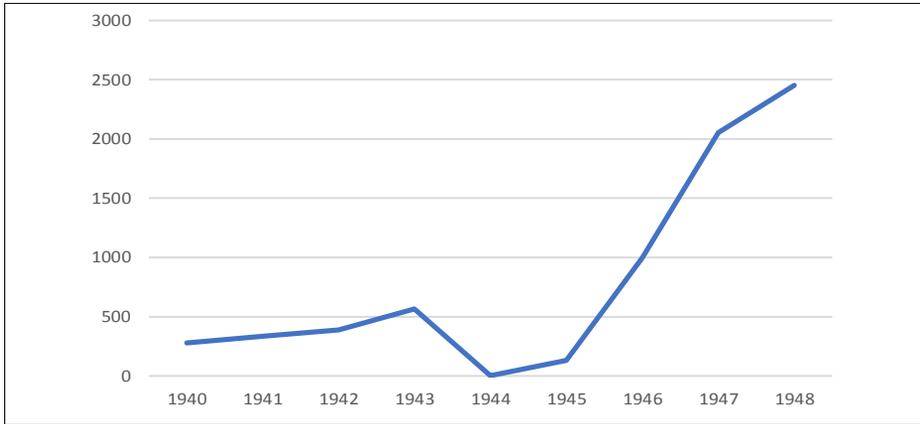
〈그림 7〉 조세의 구성(% , 1910-1948)



자료: 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와 <표 A1-1>의 분류기준을 이용한 필자의 분류.

1945년 해방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 기간 동안의 재정정책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세제사』에 수록되어 있는 조세수입 자료와 안상훈 외(2005)가 조사한 복지지출 자료를 이용하였다. 1945년 해방이후 조세제도 자체의 큰 변화는 없었다.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조세제도를 유지하여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명목가치로 평가한 조세수입은 해방직후 1945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기간 동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그림 8〉). 이러한 조세수입의 증가는 세입기반 확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방이후 경험한 초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이다(〈그림 11〉 참조). 본 연구의 세대간 회계 추계를 위하여 물가변동 사항을 조정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조세구성은 일제강점기에 비하여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7〉). 소비세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으나 자산보유세와 거래세는 비중은 낮아졌으며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 비중은 높아졌다. 이러한 조세비중의 변화는 해방이후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8〉 조세수입(명목, 단위: 백만원(圓), 1940-1948)



자료: 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미군정기의 세분류된 복지지출에 대한 자료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안상훈 외(2005)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이 조사한 복지예산 총액을 이용하였다. 조세수입과 마찬가지로 복지지출의 명목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보인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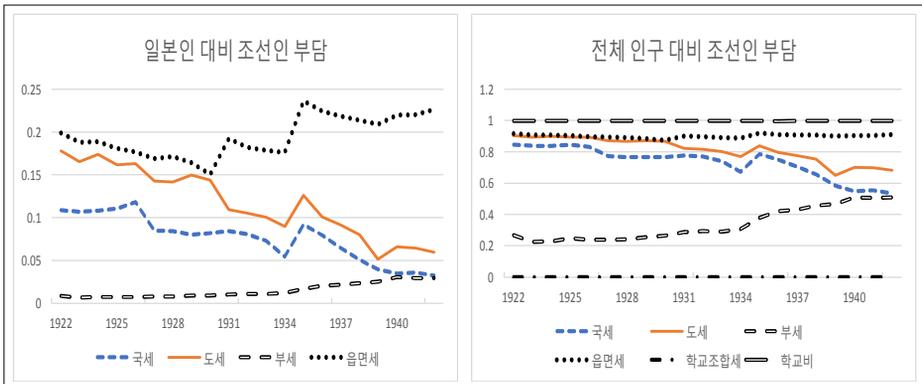
V.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의 산출과정

일제강점기 회고적 회계(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RGA)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정정책 항목은 복지정책을 통한 이전지출과 세목별 조세부담이다. 이전지출은 복지급여에 해당되는 중앙정부(총독부 특별회계)의 보건지출과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보전 그리고 여타 복지급여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국비, 지방비, 임시은사금, 은사이제구조부조금, 일본실로부터의 어하사금(御下賜金), 흉년시 궁핍한 궁민(窮民)을 구제하기 위한 궁민구조금으로 분류하였다(〈표 2〉).

회고적 세대간 회계 추계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세부담으로 간주하였다. 정부세입 중 전매익금과 세외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수입은 구

체적인 대가 없이 정부가 징수해가는 조세와 상이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외수입의 경우 공기업 혹은 정부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수입에 해당하며, 전매익금은 연초 판매수입이므로 조세로 보기 어렵다. <그림 5>에 의하면 1940년도에는 국세와 지방세 규모가 GDP의 9.7% 수준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의 조세제도는 다수의 세목(국세 46세목, 지방세 66세목)으로 구성되었다. 세대간 회계의 산출을 위해 이들 세목들을 각 세목의 성격을 감안하여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소비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기타조세로 분류하였다 (<부표 A1-1>).

(그림 10)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직접세 부담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이용한 저자 계산.

일제강점기동안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혜택 금액 중 어느 만큼이 조선인에게 배분되었는지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에게 배분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당시 조선인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 수급 수준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 복지급여 혜택의 경우 조선인/일본인 간 배분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므로, 조선인, 일본인(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內地人’으로 지칭됨), 여타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조세부담의 경우 직접세(소비세를 제외한 조세들)와 간접세(소비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당시 조선인보다 소득이 높았고 또한 토지 등 1인당 보유자산 일본인이 조선인에 비하여 직접세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1922년부터 1942년

간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된 조선인과 일본인 1인당 직접세 부담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이러한 직접세 부담의 차이는 국세, 지방세(도세, 부세, 읍면세, 학교조합비, 학교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의 제1부 특별경제(학교조합)는 일본인 학교재정을 담당하므로 학교조합비의 경우 100% 일본인이 부담하였으며, 제2부 특별경제(학교비)는 조선인의 학교재정을 담당하였으므로 학교비는 100% 조선인이 부담하였다. 일본인 대비 조선인의 국세부담은 약 12%에서 3.2%까지 하락하였으며, 도세의 경우 약 18%에서 6%정도까지 하락하였고, 부세와 읍면세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조선인의 부담이 높아졌으나 각각 3%, 23% 수준에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조선인, 일본인, 여타 외국인의 인구분포와 각각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전체 인구 대비 당시 조선인의 1인당 직접세 부담을 조정하였다. 간접세의 경우는 조선인과 일본인간 세부담의 차이를 추정할 수 있는 미시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 민족간 간접세 부담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조선인의 간접세 부담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에 상주민 중 일본인과 여타 외국인인 비조선인의 비중이 최저 1.4% (1910년), 최고 3.2% (1941년)에 불과하므로⁶⁾ 조세부담의 과대평가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RGA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복지지출과 조세 각 항목의 연도별 총액을 해당 연도의 연령별 추이와 인구분포에 따라 배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연도의 연령별 평균수준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출생연도로 분류된 각 세대가 과거에 납부한 조세와 수급한 복지급여의 가치를 기준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RGA의 산출이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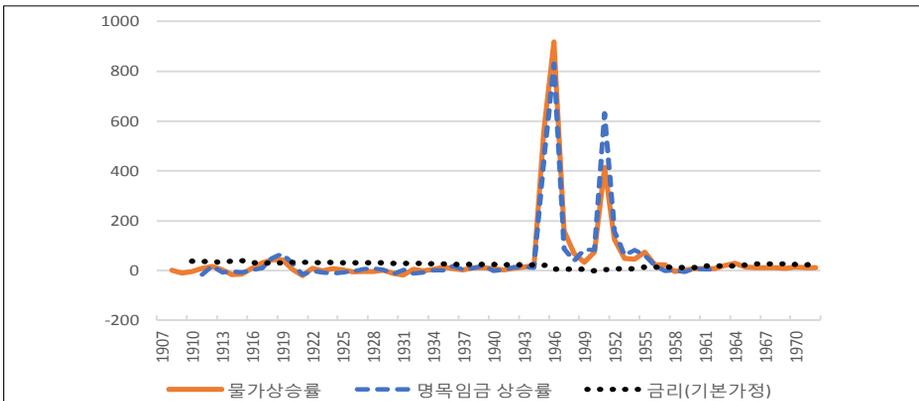
RGA 계산을 위해 먼저 화폐단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해방 이후 3차례의 화폐개혁이 있었다. 1950년 8월 28일에 일제강점기 유통되던 조선은행권과 새로이 유통되는 한국은행권간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었으며, 1953년 2월 17일 100원과 1환의 교환비율로 화폐가 교환되었고, 1962년 6월 10일 10환당 1원이 교환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화폐액의 1000분의 1로 환산하여 추계에 반영하였다. 해방 이후의 조세와 복지지출 액수도

6)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1950년 이전의 경우 1000분의 1로, 1951년부터 1953년까지의 액수는 100분의 1로 1953년부터 1962년 이전의 금액은 10분의 1로 환산하였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의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을 물가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1945년 해방후 물가수준이 대폭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즉 일종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해방직후 물가수준이 10배로 치솟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우 높은 물가상승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그림 11〉, 〈부표 A2-1〉). 〈그림 11〉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금리를 비교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57년 사이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명목 금리를 대폭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목가치가 물가상승률을 대폭 하회할 경우 1957년 이전 기간 동안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의 가치를 과소평가 할 위험성이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의 가치를 복리로 계산하여 기준연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들 가치가 과소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제강점기의 조세 및 복지지출의 명목가치를 1945년과 1956년 사이의 물가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명목가치를 상향조정하였으며, 1945년부터 1956년 이전기간동안의 조세부담과 복지지출의 가치는 1956년과 각 년도의 물가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그 명목가치를 상향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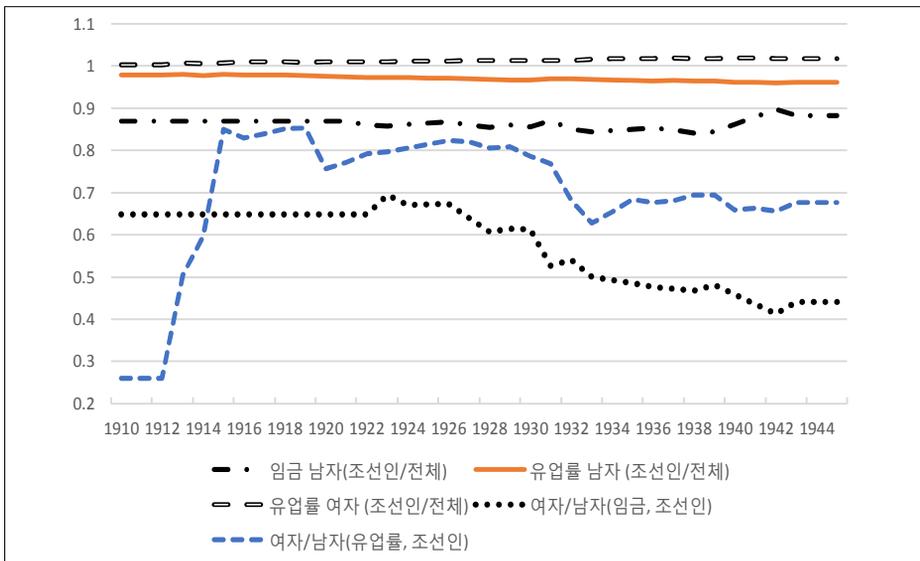
〈그림 11〉 해방직후 초인플레이션



자료: 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Cho et al. (1997), 한국의 장기통계,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이러한 조정 후, RGA 산출의 첫 단계인 각 연도 조세 및 복지급여의 연령별 평균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는 각 조세와 건강보험급여의 연령별 평균수준 추계 결과를 이용하였다. 보건관련 복지지출은 건강보험급여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여타 복지지출과 비정기적 지출은 모든 거주자에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부록 4>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연령별 평균수준이 변화한다. <부록 4>에서는 2000년도와 2013년도 연령별 추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남성 40세 수준을 1로 하였을 때 상대적 수준) 연령별 평균수준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각 연도의 연령별 평균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미시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2000년도 시점의 연령별 추이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입각하여 산출한 RGA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남녀간 조세부담의 차이가 현시점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2>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동안 유업률의 남녀 격차가 약 20~30%p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낙년·박기주(2011)에 의하면 공장임금의 남녀간 격차가 “1920년대 초 여자의 임금이 남

(그림 12)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성별 임금 및 유업률 수준



자료: 한국의 장기통계,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자의 약 69% 수준에서 1930년대 이후 50%이하로 떨어져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2018년 8월 현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의 남녀격차가 각각 27.9%p, 27.5%이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남녀간 임금격차가 2004년과 2017년에 각각 35.4%, 20.7% 인 점을 감안하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일제강점기의 남녀간 노동소득격차가 최근의 격차보다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녀간 직종과 근속연수의 차이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격차가 더 컸을 것이다. 이로 인해 남녀간 조세부담의 격차도 현시점보다 컸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부담의 남녀간 격차는 실제 격차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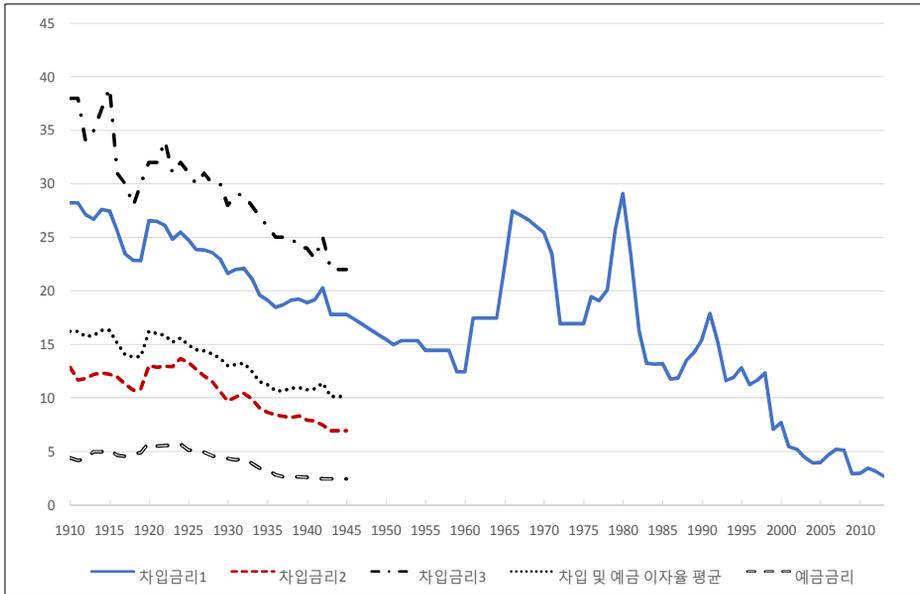
RGA 산출의 다음 단계로 기준 연도 시점에 생존하는 모든 세대의 RGA를 산출하기 위해 해당 세대가 과거 각 년도에 부담한 조세와 수급한 복지급여를 기준 연도 시점의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각 연도 조세와 복지급여의 가치를 복리로 계산하여 기준 연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각 연도의 이자율로 <그림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대안적인 이자율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림 13>에 제시한 이자율은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및 어음할인율 그리고 개인대금업자 금리 평균(차입금리 1),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및 어음할인율 평균(차입이자 2), 개인대금업자(조선인간 대부) 평균 금리(차입금리 3), 평균 차입이자율(차입금리 1)와 평균 예금금리 평균, 그리고 평균 예금금리로 구성된다. 이들 이자율간 절대적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이들 이자율 시리즈 중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자금조달의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시리즈가 선택되어야 한다. 차입금리 2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어음할인율로서 평균적인 조선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차입금리 2보다 현저히 낮은 예금금리도 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차입금리 3인 조선인간 개인대금업자 금리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이 금리 시리즈에는 조선인이 직면한 위험이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차입금리 1과 차입금리와 예금금리 시리즈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추계에서 기본가정을 차입금리 1로 하고 <그림 13>에 제시된 여타 이자율 시리즈를 상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해방 이후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이자율 실적치가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조사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별로 가용한 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였다. 1948년 이후의 이자율은 Chun and Song(2018)의 가정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⁷⁾

이 두 단계를 거쳐 각 세대가 일제강점기동안 납부한 조세부담과 수급한 복지 지출의 가치를 환산한 일제강점기 RGA를 산출하였으며(〈표 3〉), 이를 Chun and Song(2018)에서 산출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RGA와 합산하여 기준연도에 생존한 전 세대의 생애기간동안의 RGA를 산출(〈표 4〉)하였으며, 이를 FGA와 합산하여 전생애회계(FLGA)를 산출하였다.

〈그림 13〉 이자율 가정(%)



자료: 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Cho et al. (1997), 한국의 장기통계,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일본은행 홈페이지.

7) 1948년부터 1963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에서 조사한 예금금리를, 1964년부터 1975년까지는 Cho et al. (1997)이 조사한 은행대출 금리를, 1976년부터 1991년까지는 회사채(장내) 금리를,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회사채(장외 3년 AA-등급) 금리를,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국고채(3년물) 금리, 2000년과 그 이후 기간은 국고채(1년물) 금리를 사용하였다. 이들 이자율들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국고채(1년물) 금리수준으로 환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이자율이 겹치는 기간 동안의 금리차이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하였다.

VI. 세대간 회계의 산출 결과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회고적 세대간 회계

제VI장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산출한 일제강점기의 회고적 세대간 회계(RGA_10_48)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회계는 김낙년·박기주(2007)가 추계한 해방 전후의 물가지수(<부표 A2-1>)를 이용하여 물가수준을 조정한 조세부담과 복지지출을 이용하여 추계한 것이다. 기준 경제(2013년) 시점에서 65세 미만 세대의 경우 RGA_10_48은 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세대는 1948년 이후 출생 세대로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이다. 1948년 이전 출생세대 즉, 65세 이상 세대의 경우 미미하지만 미군정 기간 동안 다소간의 사회보장 및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조세를 납부하였으나 순조세부담은 그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에 따라 RGA_10_48의 규모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80세 이상(1933년생) 세대의 경우 RGA_10_48이 220만원을 상회하며 90세(1923년생) 이상세대의 경우 1,200만원을 상회하며, 99세(1914년생)인 세대는 5,3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재정정책에 영향을 받는 세대는 기준 연도에 68세 이상(1945년생)인데, 연령이 상승할수록(출생연도가 빠를수록) RGA가 더 크며 연령별 규모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각 세대가 일제강점기에 생존한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기준 연도에 99세인 세대(1914년생)는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 31년 동안 생존한 반면, 90세(1923년생)의 경우 22년 동안, 70세(1943년생)의 경우 2년 동안 생존하였다. 출생연도가 빠를수록 일제강점기동안 부담한 순조세부담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각종 조세의 연령별 평균수준이 20세 정도에서 연령이 상승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부록 3>). 예를 들어 1914년생의 경우 1945년에 31세로서 출생연도가 늦은 세대들보다 조세부담이 높은 20대의 대부분을 일제강점기에 생존하였기 때문에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기타조세 등 조세부담을 다른 세대들에 비하여

더 많이 부담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세의 종류별로 보면 소비세, 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부담이 다른 종류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지급여는 조세부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급여 중에서도 보건관련 복지혜택이 사회보장 및 복지 혜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전반적인 조세부담과 복지혜택이 남성이 더 크게 나

〈표 3〉 세대간 회계
(RGA_10_48,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기, 단위: 1,000원)

연령	보건 위생	사회보장 및 복지	노동 소득세	자본 소득세	소비세	자산 거래세	자산 보유세	기타 조세	합계
전체									
65	0	-30	0	0	0	0	0	0	-30
70	-38	-190	0	0	570	0	0	2	345
75	-261	-767	0	0	2,190	0	0	15	1,177
80	-420	-1,277	0	0	3,881	0	0	49	2,234
85	-1,021	-1,645	1	0	7,326	0	0	154	4,814
90	-3,028	-2,006	47	154	16,295	20	259	515	12,255
95	-8,966	-3,443	177	1,053	44,228	184	1,215	1,480	35,928
99	-10,039	-3,785	273	1,816	60,269	418	1,179	3,165	53,296
남자									
65	0	-30	0	0	0	0	0	0	-30
70	-42	-190	0	0	545	0	0	2	315
75	-291	-767	0	0	2,107	0	0	15	1,063
80	-480	-1,277	0	0	3,765	0	0	49	2,057
85	-1,161	-1,645	0	0	7,162	0	0	154	4,511
90	-3,398	-2,006	26	219	16,031	33	846	515	12,265
95	-10,006	-3,443	154	1,301	43,671	345	3,959	1,480	37,461
99	-11,054	-3,785	316	2,264	59,273	942	3,748	3,165	54,871
여자									
65	0	-30	0	0	0	0	0	0	-30
70	-34	-190	0	0	590	0	0	2	368
75	-304	-1,070	0	0	3,194	0	0	32	1,852
80	-393	-1,277	0	0	3,932	0	0	49	2,311
85	-960	-1,645	1	0	7,397	0	0	154	4,947
90	-2,867	-2,006	56	126	16,410	14	4	515	12,251
95	-8,513	-3,443	187	945	44,470	114	21	1,480	35,261
99	-9,597	-3,785	254	1,621	60,702	190	61	3,165	52,611

출처: 저자 계산.

타났다.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및 자산거래세의 경우 남성의 조세부담이 더 크지만 소비세의 경우는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여성의 소비세 부담의 가치가 남성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연령별 소비세 부담 수준을 2000년경의 연령별 추이(〈부록 3〉)를 이용하여 회계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령별 추이에는 25-29세 연령구간의 평균소비세 부담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다소 높으며, 또한 일제 강점기동안의 이자율 수준이 높게 가정되었다. 이 높은 이자율에 입각하여 기준연도(2013년) 현재 복리로 계산한 여성의 소비세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동안 여성의 소비 수준이 남성에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 3〉에 보고된 여성의 소비세 부담은 남성에 비하여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급여 중 보건 위생 혜택이 남성에 대한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 위생 관련 혜택의 연령별 추이를 1990년대의 의료보험 급여의 연령별 추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남성과 여성간 의료기관 및 서비스 이용이 현시점보다 더 클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표 3〉에 보고된 보건위생 정책에 의한 혜택의 성별격차는 실제 격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2.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평가

Chun and Song (2018) 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재정정책은 2013년 현재 청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전 생애 순조세부담(FLGA)이 적게 나타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노년층의 조세부담을 청년층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준 연도에 생존한 일부 세대(1945년 이전 출생세대)가 일제강점기에 상당수준의 조세부담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조세부담을 기준으로 한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의 과도기였던 미군정 시기의 조세와 복지제도에 의한 조세부담과 복지급여의 가치도 포함하여 순조세부담이 계산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동안의 순조세부담인 회고적 회계(RGA_{10_48})는 모든 세대

의 전생애회계(FLGA)의 산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입각한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회고적 회계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회고적 회계(RGA_49_13)를 합산하여 전체 회고적 회계(RGA)를 산출하였다(〈표 4〉).

RGA를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은퇴시기에 해당하는 60~65세의 회계가 가장 크며 이보다 연령이 높은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대의 일제강점기 회고적 회계(RGA_10_48)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순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산출한 회고적 회계(RGA_49_13)는 2013년 현재 60~65세의 순조세부담이 가장 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순조세부담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RGA_49_13을 RGA_10_48과 합산하여 산출한 RGA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65세를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 RGA가 연령이 상승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령세대의 경우 연령의 상승에 따라 RGA_10_48이 증가하고 있으나 RGA_49_13가 줄어들어 순조세부담의 상승 추세를 반전시키고 있다.

RGA와 기준연도부터 사망시까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조세부담을 산출한 잔여생애 회계(FGA)를 합산한 전생애회계(FLGA)를 세대별로 비교하면 순조세부담이 연령이 낮을수록(출생연도가 늦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령이 상승할수록 순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RGA에서와 같이 FLGA에서도 2013년 현재 90세를 초과하는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90세 이하 연령세대보다 그 절대적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준연도 출생세대(0세)와 미래세대의 FLGA를 비교하면 두 회계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FLGA는 FGA와 동일하다. 즉, 기준연도 출생세대나 기준연도 이후 출생할 미래세대의 경우 RGA가 0이므로 FLGA와 FGA가 동일하다. 기준연도 출생세대보다 미래세대의 회계가 더 크다는 것을 현행의 재정정책이 유지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회계의 차이가 기준연도 출생세대 회계의 160% 수준으로서 이 두 세대의 세대간

불평등이 매우 크며 미래 어느 시점에 대규모의 순조세부담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그 절대수준이 아닌 생애소득⁸⁾ 대비 비율로 환산할 경우도 절대수준을 비교하였을 경우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표 5〉). 2013년 현재 90세 이상 세대를 제외한 연령층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90세 이상의 세대는 80세 이상 90세 미만 세대에 비하여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비율이 높으며 연령의 상승에 따라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표 5〉). 90세 초과세대의 생애소득대비 순조세부담 비율이 85~90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순조세부담이 75세 이하 세대들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순조세부담이 청년층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90세 초과 초고령층의 순조세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먼저 노년세대, 특히 90세 이상 세대의 생애소득이 청년층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청년층과 중년층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결과 이들의 생애소득이 높아졌으나 경제성장의 혜택을 대폭적으로 받지 못한

8) 생애소득은 생애기간동안 획득한 비자산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을 기준연도 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생애소득은 과거에 획득한 비자산소득의 가치(RLI)와 미래, 즉 잔여 생애동안 획득할 비자산소득의 현재가치(FLI)의 합으로 구성된다. FLI는 향후 임금상승률 및 성별 연령별 임금수준에 대한 가정에 입각하여 산출된다. RLI는 과거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임금수준을 추계한 후 각 세대별로 과거에 획득한 임금을 복리로 계산하여 기준연도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임금수준의 추계는 연도별 평균임금 수준 추계와 연도별 연령별 임금프로파일 추정으로 이루어진다. 연도별 평균임금 추계는 일제강점기부터 GDP 추계가 시작된 1953년 이전 기간과 1953년 이후 기간에 대해 상이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1953년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낙성대 연구소가 추계한 '장기실질임금지수, 1710-2010'를 이용하였다. 1953년 이후 기간은 한국은행이 추계한 GDP와 노동소득 분배율과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임금 프로파일 추정도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기간에 대해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해방이후 기간 동안의 프로파일은 2000년대 초반기에 조사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프로파일을 1945년 이후 기간에 적용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프로파일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당시 전체 인구 대비 남자 조선인의 (공업)임금 수준, 전체 인구대비 남자 조선인의 유업률 수준, 남자 조선인 대비 여자조선인의 (공업)임금과 유업률 수준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임금 프로파일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계된 연도별 평균임금과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임금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평균 노동소득을 추계하였다.

초고령층의 경우 생애소득 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의 순조세부담을 기준연도 시점의 가치로 평가할 때 사용한 이자율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용한 이자율 시리즈에 따라 이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애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한) 잔여생애 회계(FGA)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크기 때문이다. 90세 이상 세대의 잔여생애회계 FGA가 다른 노년세대보다 큰 이유는 이들 세대들이 잔여생애동안 정부로 수급할 복지급여의 가치가 다른 세대보다 작기 때문이다. 복지급여를 수급할 기간이 짧은 뿐만 아니라 이들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경우 90대 이상 노년층의 대부분이 제도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순조세부담을 성별로 비교하면, 절대적인 규모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세대별(기준연도 시점의 연령별) 순조세부담을 보면 남성과 여성을 합한 전체의 순조세부담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FLGA의 경우 90세 초과 연령의 순조세부담이 연령 90세의 순조세부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FLGA를 생애소득 대비 비율로 평가해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90세 초과세대의 생애소득 FLGA를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금액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그 수준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연령집단의 생애소득 대비 RGA가 여성의 경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RGA_10_48과 RGA_49_13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는 이들 연령계층 여성의 생애소득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기준연도 시점까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소득 수준이 낮은 수준이 낮아 생애소득 수준에서 남성과 여성이 큰 폭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연령 집단을 제외하고는 생애소득대비 FLGA FGA, RGA 수준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은 물가 및 임금상승폭 조정과 이자율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낙년·박기주(2007)와 한국은행의 해방직후 소비자 물가 상승폭

에 대한 추계치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부표 A2-1〉). 본 연구의 기본가정에서는 김낙년·박기주(2007)의 추계를 반영하였다. 물가상승폭 차이에 의한 회계의 민감도를 보기 위해 한국은행의 추계치를 이용하여 회계를 산출하였다((1)). 물가상승폭이 김낙년·박기주(2007)에 비하여 높게 추계한 한국은행의 물가추계를 이용하였을 때 노년층의 순조세부담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기준 가정하에서 산출된 회계와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한 이자율 시리즈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순조세부담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자율 시리즈를 가정하여 RGA를 산출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기본가정하의 대출이자율, 어음할인율, 그리고 개인대금업자 금리 평균의 대안으로 대부이자율 및 어음할인 평균((2)), 개인대금업자(조선인간) 평균금리((3)), 대출이자율, 어음할인율, 개인대금업자 금리평균((1))으로 정의되는 차입이자율과 예금이자율 평균((4)), 예금금리((5))를 상정하였다.

이들 시리즈들을 상정하여 일제강점기의 회고적 회계를 산출한 결과 이자율 가정에 따라 세대간 회계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기본 가정보다 낮은 이자율을 사용한 경우((2), (4), (5)), 연령의 상승에 따라 FLGA가 감소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높은 이자율 가정을 한 경우((3)),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FLGA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 민감도 분석의 결과는 회고적 회계 산출시 이자율의 적절한 선택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이자율 시리즈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이자율 시리즈라고 함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시리즈 (4)는 당시 조선인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과대평가하여 이자율 수준이 자금 조달비용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이자율과 어음할인율 평균 금리((2))는 제도권 금융권의 대출이자율로 해석될 수 있어 평균적인 조선인보다 일본인이나 사업자들이 접근 가능한 이자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시 조선인의 자금조달 비용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시리즈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예금이자율((5))도 당시 조선인의 자금조달비용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4) 세대간 회계의 구성(단위: 1000원)

연령	전체						남자						여자					
	RG_A_10_48	RG_A_49_13	RG_A	FGA	FLGA	RG_A_10_48	RG_A_49_13	RG_A	FGA	FLGA	RG_A_10_48	RG_A_49_13	RG_A	FGA	FLGA			
0	0	0	0	288,146	288,146	0	0	0	373,540	373,540	0	0	0	197,099	197,099			
5	0	2,905	2,905	283,653	286,558	0	2,581	2,581	372,067	374,647	0	3,251	3,251	190,516	193,768			
10	0	7,729	7,729	266,220	273,949	0	7,210	7,210	356,013	363,223	0	8,296	8,296	169,368	177,665			
15	0	13,223	13,223	277,471	290,695	0	12,578	12,578	366,718	379,296	0	13,944	13,944	180,884	194,828			
20	0	20,285	20,285	276,001	296,286	0	19,293	19,293	361,762	381,056	0	21,421	21,421	178,258	199,680			
25	0	41,851	41,851	243,711	285,562	0	44,378	44,378	327,052	371,430	0	39,084	39,084	153,606	192,690			
30	0	77,650	77,650	186,506	264,156	0	83,199	83,199	268,468	351,666	0	71,793	71,793	101,186	172,979			
35	0	120,725	120,725	147,867	268,592	0	132,791	132,791	217,263	350,054	0	108,139	108,139	77,045	185,183			
40	0	163,874	163,874	106,609	270,483	0	187,030	187,030	158,304	345,334	0	139,958	139,958	55,395	195,354			
45	0	204,048	204,048	68,416	272,463	0	242,415	242,415	99,827	342,241	0	164,388	164,388	37,686	202,073			
50	0	235,175	235,175	16,830	252,005	0	286,197	286,197	32,399	318,596	0	183,764	183,764	1,198	184,962			
55	0	268,633	268,633	-4,850	263,783	0	334,755	334,755	3,772	338,527	0	203,043	203,043	-13,330	189,713			
60	0	286,636	286,636	-33,485	253,152	0	365,709	365,709	-29,166	336,544	-30	205,564	205,534	-54,412	151,122			
65	-30	271,803	271,773	-48,225	223,548	-30	345,918	345,888	-41,558	304,330	368	181,208	181,576	-55,199	126,376			
70	345	239,020	239,365	-48,661	190,704	315	313,038	313,353	-40,713	272,641	1,852	157,771	159,624	-48,758	110,865			
75	1,177	208,291	209,467	-40,628	168,839	1,063	283,865	284,928	-29,284	255,644	2,311	148,546	150,857	-46,334	104,523			
80	2,234	183,030	185,264	-39,556	145,709	2,057	262,308	264,365	-27,716	236,649	4,947	134,601	139,547	-47,107	92,440			
85	4,814	162,989	167,803	-40,776	127,027	4,511	228,251	232,762	-24,754	208,008	12,251	119,933	132,184	-39,807	92,377			
90	12,255	143,225	155,480	-36,309	119,171	12,265	196,771	209,036	-25,559	183,477	35,261	101,223	136,485	-25,474	111,011			
95	35,928	118,834	154,762	-24,182	130,581	37,461	159,320	196,781	-18,532	178,249	52,611	82,362	134,972	-8,092	126,880			
99	53,296	95,669	148,965	-7,854	141,111	54,871	126,263	181,133	-6,437	174,697	-	-	-	513,840	513,840			
미래 세대	-	-	-	749,952	749,952	-	-	-	-973,827	973,827	-	-	-	-	-			

주: RG_A_10_48: 1910-1948기간의 순조세부담.

RG_A_49_13: 1949-2013 기간의 순조세부담.

FGA: 잔여생애동안의 순조세부담.

FLGA: 전체 생애의 순조세부담.

자료: Chun and Song(2018) 및 저자 계산.

(표 5)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단위: %)

연령	RGA 10_48				RGA 49_13				RGA				FGA				FLGA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1	25.0	20.0	23.1	25.0	20.0	23.1	25.0	23.1	25.0	23.1	25.0	20.0	23.1	25.0
5	0.0	0.0	0.0	0.2	0.2	0.2	0.3	0.2	0.2	22.2	24.3	18.9	22.2	24.3	18.9	22.2	24.3	22.2	24.3	22.2	24.3	18.9	22.2	24.3
10	0.0	0.0	0.0	0.6	0.5	0.6	0.8	0.6	0.5	20.3	22.7	16.4	20.3	22.7	16.4	20.3	22.7	20.3	22.7	20.3	22.7	16.4	20.3	22.7
15	0.0	0.0	0.0	1.0	0.8	1.0	1.3	1.0	0.8	20.7	22.9	17.2	20.7	22.9	17.2	20.7	22.9	20.7	22.9	20.7	22.9	17.2	20.7	22.9
20	0.0	0.0	0.0	1.5	1.2	1.5	2.0	1.5	1.2	20.7	23.0	16.9	20.7	23.0	16.9	20.7	23.0	20.7	23.0	20.7	23.0	16.9	20.7	23.0
25	0.0	0.0	0.0	3.2	2.8	3.2	3.8	3.2	2.8	18.6	20.9	14.8	18.6	20.9	14.8	18.6	20.9	18.6	20.9	18.6	20.9	14.8	18.6	20.9
30	0.0	0.0	0.0	6.0	5.4	6.0	6.9	6.0	5.4	14.5	17.5	9.8	14.5	17.5	9.8	14.5	17.5	14.5	17.5	14.5	17.5	9.8	14.5	17.5
35	0.0	0.0	0.0	9.3	8.6	9.3	10.4	9.3	8.6	11.4	14.1	7.4	11.4	14.1	7.4	11.4	14.1	11.4	14.1	11.4	14.1	7.4	11.4	14.1
40	0.0	0.0	0.0	12.7	12.2	12.7	13.5	12.7	12.2	8.3	10.3	5.4	8.3	10.3	5.4	8.3	10.3	8.3	10.3	8.3	10.3	5.4	8.3	10.3
45	0.0	0.0	0.0	16.0	15.9	16.0	16.1	16.0	15.9	5.4	6.5	3.7	5.4	6.5	3.7	5.4	6.5	5.4	6.5	5.4	6.5	3.7	5.4	6.5
50	0.0	0.0	0.0	18.6	18.9	18.6	18.1	18.6	18.9	1.3	2.1	0.1	1.3	2.1	0.1	1.3	2.1	1.3	2.1	1.3	2.1	0.1	1.3	2.1
55	0.0	0.0	0.0	21.8	22.5	21.8	20.7	21.8	22.5	-0.4	0.3	-1.4	-0.4	0.3	-1.4	-0.4	0.3	-0.4	0.3	-0.4	0.3	-1.4	-0.4	0.3
60	0.0	0.0	0.0	24.2	25.3	24.2	22.6	24.2	25.3	-2.8	-2.0	-4.0	-2.8	-2.0	-4.0	-2.8	-2.0	-2.8	-2.0	-2.8	-2.0	-4.0	-2.8	-2.0
65	0.0	0.0	0.0	24.1	24.8	24.1	23.1	24.1	24.8	-4.3	-3.0	-6.1	-4.3	-3.0	-6.1	-4.3	-3.0	-4.3	-3.0	-4.3	-3.0	-6.1	-4.3	-3.0
70	0.0	0.0	0.0	22.7	23.4	22.7	21.9	22.8	23.5	-4.6	-3.0	-6.7	-4.6	-3.0	-6.7	-4.6	-3.0	-4.6	-3.0	-4.6	-3.0	-6.7	-4.6	-3.0
75	0.1	0.1	0.2	21.2	22.2	21.3	20.0	21.3	22.3	-4.1	-2.3	-6.2	-4.1	-2.3	-6.2	-4.1	-2.3	-4.1	-2.3	-4.1	-2.3	-6.2	-4.1	-2.3
80	0.3	0.2	0.3	20.5	21.7	20.7	19.6	20.7	21.9	-4.4	-2.3	-6.1	-4.4	-2.3	-6.1	-4.4	-2.3	-4.4	-2.3	-4.4	-2.3	-6.1	-4.4	-2.3
85	0.6	0.4	0.7	18.8	19.8	18.1	18.1	19.3	20.1	-4.7	-2.1	-6.3	-4.7	-2.1	-6.3	-4.7	-2.1	-4.7	-2.1	-4.7	-2.1	-6.3	-4.7	-2.1
90	1.5	1.1	1.7	17.5	18.0	17.1	17.1	19.0	19.2	-4.4	-2.3	-5.7	-4.4	-2.3	-5.7	-4.4	-2.3	-4.4	-2.3	-4.4	-2.3	-5.7	-4.4	-2.3
95	4.5	3.5	5.2	15.0	14.9	15.0	15.0	19.5	18.4	-3.0	-1.7	-3.8	-3.0	-1.7	-3.8	-3.0	-1.7	-3.0	-1.7	-3.0	-1.7	-3.8	-3.0	-1.7
99	6.5	4.9	7.6	11.7	11.3	11.9	11.9	18.1	16.2	-1.0	-0.6	-1.2	-1.0	-0.6	-1.2	-1.0	-0.6	-1.0	-0.6	-1.0	-0.6	-1.2	-1.0	-0.6
미래 세대	-	-	-	-	-	-	-	-	-	60.1	65.2	52.1	60.1	65.2	52.1	60.1	65.2	60.1	65.2	60.1	65.2	52.1	60.1	65.2

주: RGA_10_48: 1910-1948기간의 순조세부담.

RGA_49_13: 1949-2013 기간의 순조세부담.

FGA: 잔여생애동안의 순조세부담.

FLGA: 전체 생애의 순조세부담.

자료: Chun and Song(2018) 및 저자 계산.

〈표 6〉 민감도 분석(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 단위: %)

	RGA_10_481) (생애소득 대비)					RGA_10_482) (일제강점기 발생 소득 대비)					FLGA							
	기본가정 ³⁾	(1) ³⁾	(2) ³⁾	(3) ³⁾	(4) ³⁾	(5) ³⁾	기본가정	(1)	(2)	(3)	(4)	(5)	기본가정	(1)	(2)	(3)	(4)	(5)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1	23.1	23.1	23.1	23.1
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4	22.4	22.4	22.4	22.4	22.5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9	20.9	20.9	20.9	20.9	20.9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7	21.7	21.7	21.7	21.7	21.8
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2	22.2	22.2	22.2	22.2	22.3
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8	21.8	21.8	21.8	21.8	21.6
3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5	20.5	20.5	20.5	20.5	20.0
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8	20.8	20.8	20.8	20.8	19.8
4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0	21.0	21.0	21.0	21.0	19.2
4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4	21.4	21.4	21.4	21.4	18.3
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9	19.9	19.9	19.9	19.9	15.9
5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4	21.4	21.4	21.4	21.4	16.1
6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4	21.4	21.4	21.4	21.4	15.1
6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8	19.8	19.8	19.8	19.8	13.9
7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8.1	18.2	18.1	18.2	18.1	12.6
75	0.1	0.1	0.1	0.1	0.1	0.1	0.0	0.0	0.0	0.0	0.0	0.0	17.1	17.2	17.1	17.2	17.2	12.0
80	0.3	0.3	0.1	0.4	0.2	0.1	28.8	14.2	39.7	17.3	10.4	16.3	16.7	16.5	16.5	16.8	16.6	12.6
85	0.6	0.7	0.2	1.1	0.3	0.1	7.3	8.0	12.8	3.4	1.7	14.6	15.7	15.2	16.1	15.3	11.7	
90	1.5	1.9	0.4	3.7	0.6	0.2	12.4	13.4	26.8	4.6	2.0	14.5	16.3	14.8	18.1	14.9	11.4	
95	4.5	6.1	0.9	15.0	1.4	0.5	22.6	24.0	4.7	57.4	6.6	16.4	19.8	14.6	28.7	15.1	11.6	
99	6.5	9.1	1.2	24.8	1.8	0.7	19.8	20.7	4.7	45.1	6.4	17.2	21.7	13.8	37.5	14.4	11.3	
미래세대	-	-	-	-	-	-	-	-	-	-	-	-	60.1	60.1	60.1	60.1	60.1	60.1

자료: 저자 계산.

본 연구에서 상정한 5가지 이자율 시리즈 중 기준가정과 가정 (4)가 다른 이자율 시리즈에 비하여 조선인의 자금조달 비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 두 시리즈를 이용하여 산출한 FLGA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고령층의 생애순조세 부담이 청년층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이후 기간 동안 실행된 재정정책이 노년층 및 현재세대의 조세 부담을 청년층과 미래세대로 전가를 유발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미군정기 동안 이루어진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으로 인한 노년층의 순조세부담(RGA_10_48)을 산출하고 이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정책으로 인한 순조세부담(RGA_49_13)과 현행의 정책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순조세부담의 가치(FGA)와 합산함으로써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와 미래세대의 전생애순조세부담(FLGA)을 산출하고 FLGA를 기준으로 세대간 순조세부담 비교함으로써 순조세부담 측면의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세대간 회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중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의 전 생애 순조세부담을 기준으로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드물다. 외국의 경우 몇몇 연구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Chun and Song(201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Chun and Song(2018)의 경우도 분석 대상 재정정책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 동안 실시된 정책에 국한되므로 일부 노년세대들이 과거 일제강점기와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과도기간의 순조세부담이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들 세대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동안 부담한 순조세부담을 산출하여 Chun and Song(2018)의 추계와 통합하여 FLGA를 완성하였다.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추계한 일제강점기 경제와 재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한국세제사』에 수록되어 있는 조세통계, 그리고 안상훈 외(2005)가 조사한 복지관련 통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일제강점기의 순조세부담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일부 초고령 계층의 경우 여타 고령층에 비하여 생애 순조세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의 세부담도 중년층과 청년층에 비하여 순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최근 복지정책의 확충 과정에서 노인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노인층에 대한 이전지출의 증가는 노인층의 순조세부담이 청년층 혹은 유년층에 비하여 작으므로 한국의 조세정책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 전생애회계 (FLGA) 가 산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대간 형평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FGA 혹은 FGA와 RGA 일부를 반영한 FLGA를 바탕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를 시도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모든 세대의 전생애동안의 순조세부담 (FLGA) 을 추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부담 측면의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었다고 할 수 있다.

FLGA를 기준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통해 청년층과 미래세대로부터 노년세대와 현재세대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초고령계층은 여타 고령집단과 달리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순조세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민연금 수혜자가 초고령층에도 확대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과도기 동안에는 저소득층 초고령층에 대한 복지정책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높은 순조세부담이며 이들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애 순조세부담이라는 금전적인 가치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생애동안 정부에 납부한 조세에서 정부로부터 수급한 이전수입을 차감한 순조세부담의 생애가치를 평가하였다. 정부재정에 기여하는 방식은 이러한

금전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근로를 통해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군역, 부역, 강제 동원, 노역 등의 형태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본의 정부재정에 상당 수준 기여하였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경제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에서 열거한 형태의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해당 근로의 시장가치로 평가하여야 할지 아니면 참가자의 노동생산성, 다시 말하면 해당 근로에 동원되지 않았다면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야 할지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애로 중의 하나는 이자율 시리즈 선택의 문제였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의 순조세부담을 기준연도 시점으로 평가하기 위해 당시 조세부담을 복리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어느 이자율 시리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추계결과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범위의 이자율을 이용하여 추계할 경우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추계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자금조달의 기회비용을 평가하는 것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 김낙년·박기주, 「해방 전후(1936-1956년) 서울의 물가와 임금」, 『경제사학』, 제42권 0호, 2007, pp. 71-105
- _____, 「식민지기 조선의 임금수준과 임금격차 -공장임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제74권 0호, 2011, pp. 379-417
-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김낙년·박기주·박이택·차명수 편, 『한국의 장기통계 I, II』, 도서출판 해남, 2018.
-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naksung.re.kr/statistics>.
- 안상훈·조성은·길현중, 『한국근대의 사회복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일본은행(Bank of Japan) 홈페이지, <http://www.imes.boj.or.jp/english/hstat/index.html>.
- 전영준, 「연금과세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

- 구』, 제1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36.
- _____,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재정논집』, 제17집 제2호, 2003, pp.11-151.
- _____,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귀착: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경제학연구』, 제52집 제2호, 2004, pp.193-240.
- 전영준·이기영, 「공적자금의 재정부담 귀착에 관한 연구: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국제경제연구』, 제9권 제3호, 2003, pp.127-162
- 전영준·안종범, 「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에 대한 연구」, 『경제분석』, 제13권 제3호, 2007, pp.1-43.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
- 최기홍,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와 세대간 형평성의 측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3호, 2013, pp.1-2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 임금격차 감소,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중하위 층 여성에만 나타나는 한계」, KWDI Brief, 제48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 센터, 2018. 7. 12.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2005. 8.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2014.
- Auerbach, A., J. Gokhale, and L. Kotlikoff, "Generational Accounts: A Meaningful Alternative to Deficit Accounting,"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1, pp.55-110.
- Auerbach, Alan J. and Young Jun Chun, "Generational Accounting in Korea,"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 20, No. 2, 2006, pp.234-268.
- Auerbach, Alan J., Young Jun Chun, and Ilho Yoo, "The Fiscal Burden of Korean Reunification: A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FinanzArchiv*, Vol. 61, No. 1, 2005, pp.62-97.
- Auerbach, Alan J. and Philip Oreopoulous, "The Fiscal Effects of U.S. Immigration: A Generational-Accounting Perspective,"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14, 2000, pp.123-156.
- Auerbach, A., L. Kotlikoff, and W. Leibfritz (eds.),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NBER a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Bommier, Antoine, Ronald Lee, Tim Miller, and Stephane Zuber, "Who Wins and Who Loses? Public Transfer Accounts for US Generations Born 1850 to 2090,"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The Population Council, Inc., Vol. 36, No. 1, 2010, pp.1-26.
- Chun, Young Jun, "Population Aging, Fiscal Policies, and National Saving: Prediction for the Korean Economy," in *Fiscal Policy and Management in East Asia*, Ito, Taktoshi and Andrew K. Rose (eds), *NBER-East Asia Seminar on Economics*, Vol. 16, 2007, pp.339-376.

- Chun, Young Jun and Ji Eun Song,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Korea Economic Review*, Vol. 34, No. 2, 2018, pp.157-185.
- European Commission, "Generational Accounting in Europe," *European Economy, Reports and Studies*, 1999.
- Fehr, Hans, and Laurence J. Kotlikoff, "Generational Accounting in General Equilibrium," in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Auerbach, A. J., L. J. Kotlikoff, and W. Leibfritz (eds.), 1999, pp.43-71.
- Gal, Robert, Andras Simonovits, and Geza Tarcali, "Generational Accounting and Hungarian Pension Reform,"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No. 0127*, Social Protection Unit, Human Development Network, The World Bank, 2001.
- Gokhale, J., B. R. Page, and J. R. Sturrock, "Generational Accounts for the United States," in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Auerbach, A.J., L. J. Kotlikoff, and W. Leibfritz (eds.), 1999, pp.489-517.
- Raffulhuschen, Bernd, "Generational Accounting in Europ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99, pp.167-170.

〈부록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조세분류

〈표 A1-1〉 일제강점기 조세의 분류

구분	조세		
노동소득세	국세	소득세 제3종의 일부(1934-), 복지사변 특별세(제2종 소득)의 일부(1937-)	
	지방세	도세	-
		부세	-
		읍면세	-
		학교조합	-
		학교비	-
		기타	-
자본소득세	국세	소득세 제1종(1916-), 소득세 제2종(1934-), 소득세 제3종의 일부(1934-), 법인자본세(1937-), 광세, 외화특별세(1937-), 복지사변특별세(제1종 소득, 1937-), 복지사변 특별세(제2종 소득, 1937-), 복지사변 특별세(제2종 소득)의 일부(1937-), 복지사변특별세(이익배당, 1937-), 복지사변특별세(공사채이자, 1937-), 이익배당세(1938-), 공사채이자세(1938-), 특별법인세(1941-), 전시이득세(1918-1924), 잡세(1910-1922)	
	지방세	도세	제1종소득세부가금(1929-1939), 광세부가세(1936-), 특별소득세(1929-1939), 어업세(1920-), 선세(1920-1931),
		부세	선세부가세(1921-1929-), 제1종소득세 부가세/특별소득세부가세(1914-1939), 광세부가세(1937-), 잡종세(1911-),
		읍면세	읍면세(소득세계통, 1930-), 특별소비세부가세(1930-), 잡종세(1918-), 어업세(1918-1931), 광세부가세(1918-1926), 읍면세(기타, 1912-1940)
		학교조합	학교조합 (잡종세할, 1919-1926),
		학교비	-
		기타	-
소비세	국세	영업세(1927-), 연초세(1910-1930), 주세, 청량음료세(1934-), 사탕소비세(1919-), 휘발유세(1937-), 전기가스세(1942-), 광고세(1942-), 마권세(1942-), 관세, 복지사변특별세(물품세, 1937-), 통행세(1938-), 입장세(1938-), 특별입장세(1938-), 물품세(1938-), 유흥음식세(1939-), 직물세(1943-), 특별행위세(1943-)	
	지방세	도세	영업세부가세(1936-), 특별시장세(1927-1932), 시장세(1910-1926),
		부세	부세(영업세계통, 1911-), 조흥세(1920-1940),
		읍면세	영업세부가세(1918-), 특별영업세(1930-), 광세부가세(1937-), 조흥세(1940)
		학교조합	학교조합(영업세계통, 1919-1926),
		학교비	-
		기타	-

자산보유세	국세	지세, 상속세(1934-), 호세(1910-1918), 가옥세(1910-1918),	
	지방세	도세	지세 시가지세부가금(1910-1941), 호세(1918-), 가옥세(1919-), 임야세(1934-), 차량세(1921-),
		부세	부세(지세계통, 1911-), 부세(호세계통, 1911-) 부세(가옥계통, 1911-), 차량세부가세, 전주세(1914-1927), 부세(토지형수할, 1921-), 부세(시가지계획사업특별세, 1930-), 부세임시특별세(1937-), 임시특별건물세(1937-1938)
		읍면세	읍면세(지세계통, 1912-), 읍면세(호세계통, 1912-), 차량세부가세(1930-), 가옥세부가세(1937-), 임시특별세(1937-), 읍면세(임야할, 1918-1927),
		학교조합	학교조합(호세계통), 학교조합(가옥계통, 1919),
		학교비	학교비(지세시가지세부가금, 1913-), 학교비(호별세부가금, 1913-), 학교비(가옥세부가금, 1912-), 학교비(호별할, 1921-),
		기타	제1부특별경제호별세부가세(1931-), 제2부특별경제호별세부가세(1931-), 제2부특별경제가옥세 부가세(1931-1941)
		자산거래세	국세
지방세	도세		취인소세부가금(1936-), 부동산취득세(1926-),
	부세		거래소세부가세(1936-), 부동산취득세부가세(1936-),
	읍면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1937-),
	학교조합		-
	학교비		-
기타	-		
기타조세	국세		
	지방세	도세	도축장세,
		부세	-
		읍면세	-
		학교조합	-
		학교비	-
기타	-		

자료: 저자의 분류.

〈표 A1-2〉 미군정기 조세의 분류

구분	조세
노동소득세	소득세의 일부
자본소득세	소득세의 일부, 공채·사채 이자세, 이익배당세, 법인자본세, 자본이자세, 광세,
소비세	물품세, 입장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특별행위세, 광고세, 주세, 직물세, 청량음료세, 사탕소비세, 전기가스세, 관세
자산보유세	상속세, 지세,
자산거래세	건축세, 톨세, 취인소세,
기타조세	조선은행권 발행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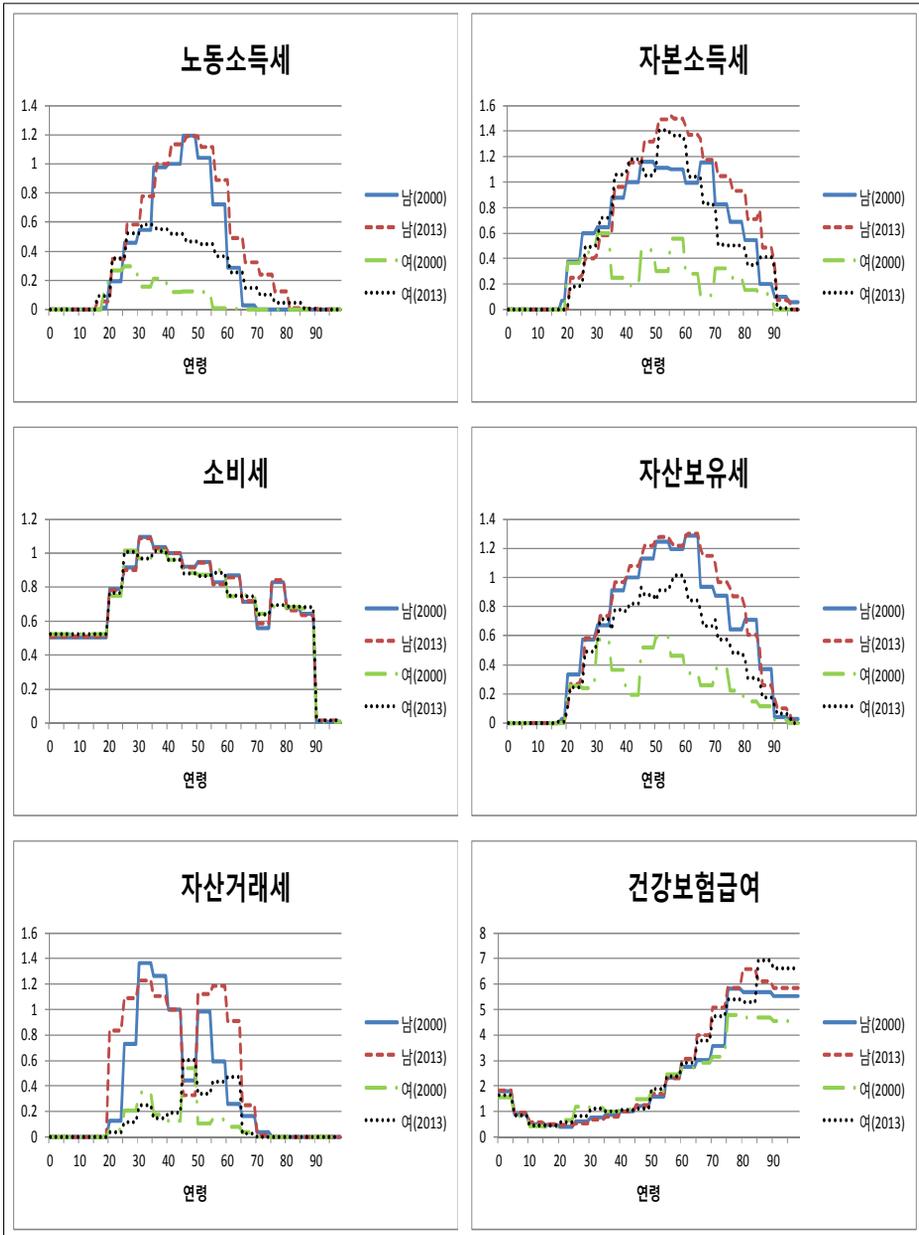
자료: 저자분류.

〈부록 2〉 해방 전후(1936-1954년) 서울의 물가지수와 임금지수

	물가지수			명목임금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도매물가	소매물가	김낙년·박기주(2007)	한국은행
	김낙년·박기주(2007)	한국은행	한국은행	김낙년·박기주(2007)	한국은행
1936	1.000	1.000	1.000	1.000	1.000
1937	1.060	1.166	1.093	1.038	1.201
1938	1.198	1.398	1.306	-	1.308
1939	1.337	1.633	1.528	-	1.396
1940	1.434	1.800	1.686	1.363	1.457
1941	1.491	1.866	1.745	1.397	1.679
1942	1.621	1.956	1.834	1.603	1.832
1943	1.841	2.151	2.017	1.818	1.998
1944	2.211	2.411	2.260	2.031	2.245
1945	14.57	-	-	11.16	-
1946	148.3	221.0	223.0	103.8	71.2
1947	383.7	402.0	409.0	193.1	148.4
1948	643.9	655.0	629.0	267.2	203.3
1949	853.0	896.0	798.0	495.2	396.0
1950	1,475	-	2,310	900.2	993.0
1951	7,585	8,820	-	6,574	5,462
1952	16,997	19,100	19,800	16,810	14,529
1953	24,999	23,900	30,200	27,150	23,822
1954	36,399	30,700	41,415	49,278	45,817
1955	63,351	55,600	69,766	78,853	73,414
1956	78,713	74,900	-	95,400	-

자료: 김낙년·박기주(2007).

〈부록 3〉 조세와 복지급여의 연령별 프로파일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Japanese Colonial and US Military Ruling Periods (1910~1948) of Korea

Young Jun Chun*

Abstract

We compute the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RGA) of Korea fo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and the US military ruling period (1945-1948) and add this to RGA for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1948) and forward-looking GA to compute the full-lifetime GAs (FLGA), which assess the value of net tax burden of lifetime for all the generations. Comparing the FLGA of all the generations born after 1913, we find the net tax payments of young age groups and future generations are much larger than those of old age groups and current generations. Therefore, the fiscal policy revisions to prevent the excessive tax burden of young age groups and future generation and to reduce their tax burden is needed.

Key Words: generational equity,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Japanese colonial period, net tax burden

JEL Code: H60, H50, N0

* Professor, Division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e-mail: yjchun@hanyang.ac.kr